

보도시점 (전매체) 국무회의 종료시점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 오는 7월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참고1)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 ①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②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 ③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④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 ⑤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⑥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참고2)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구분	선지급 방법	후지급 방법
자기주식 지급 시기	교부계약 체결 시점	성과달성 시점
보유자의 권리	실제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 의결권 등 권리 보유	실제 주식이 없으므로 권리 없음
성과 미달성 시	부여된 자기주식을 환수	청구권 소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광윤 (044-204-7706)
			주무관	김해선 (044-204-770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법 제3조의5 각 호 및 제16조의10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 ②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



을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